KDS 47 10 15 : 2019

# 철도계획

2019년 4월 8일 개정 http://www.kcsc.re.kr







## 건설기준 제정 또는 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

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,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 공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.

## 건설기준 연혁

- 이 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기존 건설기준(설계기준, 표준시방서) 간 중복· 상충을 비교 검토하여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.
- 이 기준은 기존의 철도에 해당되는 부분을 통합 정비하여 기준으로 제정한 것으로 제·개 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.

건설기준	주요내용	제정 또는 개정 (년.월)
철도설계기준(철도교편)	• 철도설계기준(철도교편)을 제정	제정 (1999.7)
철도설계기준(철도교편)	• 국제흐름에 부응하기 위해 단위체계를 국제단위 계인 SI단위로 통일하여 반영,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안전한 구조물이 되도록 함	개정 (2004.12)
철도설계기준(노반편)	• 철도노반공사의 총괄적인 시행기준과 총 6편으로 구성되어 설계에 필요한 일반적인 기준을 가급적 쉽게 이해하도록 서술	제정 (2001.12)
철도설계기준(노반편)	• 철도건설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방법과 각 편에 공통으로 포함된 환경입지조사, 지반조사, 선로측량 을 추가	개정 (2004.12)
철도설계기준(노반편)	• 철도건설규칙 수정 및 보완, 친환경철도 노선선 정 및 설계의 단계별 업무구분 추가 • 허용한계의 명확화, 내진설계기준 보완	개정 (2011.5)
철도설계기준(노반편)	• 신기술·신공법 기준 마련 등 기술적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관련 법규 및 규정의 폐지, 신설 및 개정내용 과 설계기준 개정 내용 반영, 기술적 환경변화 대응을 위한 기준을 마련	개정 (2011.12)

건설기준	주요내용	제정 또는 개정 (년.월)
철도설계기준(노반편)	기존철도 등 일반철도의 열차속도를 시속 200km 이상으로 속도향상 시키는데 필요한 기준들을 중심으로 검토     철도건설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제반 연구 결과 및 철도관련 상위 법령, 설계기준 및 시방서 등의 개정된 내용을 반영     궤도, 전기 분야와의 인터페이스를 고려하였으며 향후 철도관련 기술발전 등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개정	개정 (2013.11)
철도설계기준(노반편)	• 향후 국내외 철도건설기술 발전 등 기술적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방법 • 안전기준 강화 및 철도관련 상위법령, 규정, 기 준 등의 개정된 내용을 반영	개정 (2015.12)
KDS 47 10 15 : 2016	•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코드화로 통합 정비함	제정 (2016.6)
KDS 47 10 15 : 2019	• 철도 건설기준 적합성평가에 의해 코드를 정비함	개정 (2019.04)

제 정: 2016년 6월 30일 개 정: 2019년 4월 08일

심 의 :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자문검토 :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

소관부서 : 국토교통부 철도건설과

관련단체 : 한국철도시설공단 작성기관 : 한국철도기술연구원

# 목 차

1.	일반사항	· 1
	1.1 목적	
	1.2 적용 범위	· 1
	1.3 참고 기준	· 1
	1.4 용어의 정의	· 1
	1.5 기호의 정의	· 1
2.	조사 및 계획	· 1
	2.1 철도건설 및 개량계획	· 1
	2.2 타당성 조사(학술분야)	
	2.3 철도노반계획	. 9
	2.4 사업시행 환경조사	12
3.	재료	16
4.	설계1	16
	4.1 설계 일반사항	16
	4.2 설계의 단계별 업무구분	21
	4.3 내진설계	24
부	록 내진설계기준 별표	31

철도계획 KDS 47 15 05 : 2019

#### 1. 일반사항

#### 1.1 목적

(1) 이 기준은 철도건설에 대한 계획, 예비타당성조사, 기본계획수립, 기본설계, 실시설계, 공사 집행 시공, 준공, 개통, 영업개시에 관한 기술적 사항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#### 1.2 적용 범위

내용 없음

#### 1.3 참고 기준

내용 없음

#### 1.4 용어의 정의

내용 없음

#### 1.5 기호의 정의

내용 없음

#### 2. 조사 및 계획

내용 없음

#### 2.1 철도건설 및 개량계획

#### 2.1.1 계획의 일반

#### (1) 건설사업계획

- ① 철도건설 및 개량사업(이하 '건설사업'이라 한다.)은 건설계획, 예비타당성조사, 기본계획수립, 기본설계, 실시설계, 공사 집행·시공, 준공·시운전, 개통·영업개시 등 단계별로 구분하여 효율적으로 추진한다.
- ② 건설계획은 건설사업의 목적과 필요성, 철도시스템, 선로구간 및 연장, 정거장입지, 건설기간 및 건설비추정 등을 구상하여 예비타당성조사, 기본계획수립, 기본설계, 실시설계, 공사 집행·시공, 준공·시운전, 개통·영업개시 등 단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다.
- ③ 예비타당성조사는 도로·철도부분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(한국개발연구원)에 따라 타당성조사 업무를 시행한다.
- ④ 기본계획 수립은 예비타당성조사를 토대로 건설사업의 시스템 및 사업규모검토,

1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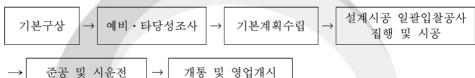
노선 및 정거장입지 선정, 교통영향 분석에 따른 수송수요 등 기술성과 경제성을 평가하여 노선 및 시설계획, 투자계획, 재원조달계획, 연차별 시행계획 등 건설사 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시행한다.

#### (2) 철도건설사업 시행

- ① 철도건설사업의 시행은 철도건설사업 시행지침(국토교통부)에 의하여 시행하며 필요할 경우 다른 지침 등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를 수 있다.
- ② 공사방식 결정은 철도건설사업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 기준(국토교통부)에 따른 중앙건설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결정한다.

#### 가. 기타공사방식





## (3) 기본계획수립 조사 일반

- ① 기본계획수립 조사는 당해 사업의 수행을 결정하기 위하여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를 토대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철도시스템 및 노선선정과 정거장입지선정, 선 로시설물과 지장물 보상, 건설비의 적정성과 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한다.
- ② 최적대안으로 선정된 노선 및 정거장계획과 사업비산정, 수송수요예측 및 경제적 타당성분석 등 대상 사업에 대한 기술 및 학술적 검토분석을 거쳐 사업의 기본계획을 수립한다.
- ③ 기본계획수립조사는 그림 2.1.1-1의 흐름도와 같은 내용으로 실시한다.

철도계획 KDS 47 15 05 : 2019



그림2.1.1-1기본계획수립조사흐름도

#### 2.1.2 관련 계획 조사 분석

- (1)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을 조사 분석한다.
- (2) 기존철도 시설현황 및 시설계획을 조사하여 분석한다.
- (3) 현지답사 등 현장조건을 조사하여 분석한다.
- (4) 수리, 수문 및 하천, 기상, 해양 등 참고문헌 및 자료를 조사한다.

- (5) 필요한 경우 연약지반 등 지반조사를 한다.
- (6) 지장물보상, 민원 및 용지 등의 실태조사를 한다.
- (7) 필요한 경우 당해 사업과 관계된 지역의 자연환경을 조사한다.

#### 2.1.3 인문사회 현황 조사 분석

- (1) 사회·경제지표 등 교통 관련 자료 분석, 직접 및 간접 대상지역의 인구·고용·산 업·교육 등 수송수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사회·경제적 자료를 수집 분석한 다.
- (2) 대상지역의 토지이용계획, 도시기본계획, 지역개발계획, 교통수요를 유발시키는 산업 단지 개발계획, 대규모 위락시설계획 등 관련 계획의 개발방향을 분석하고, 장기 철도 망 정비계획과 주변 도로망의 신설 및 확장 등 교통시설 개발계획을 분석한다.
- (3) 신설역에 대한 역세권, 향후 발전계획, 수요유발 등을 분석한다.
- (4) 교통 현황조사 및 분석
  - ① 장래의 시설기준, 애로구간 판단 및 시설용량 등의 설정을 위해 철도·도로·항공 등 수송수단별로 현재의 시설상태, 운영체계, 수송능력, 한계용량 도달시기 및 연계 교통체계 등을 조사 분석한다.
  - ② 교통수단별 특성과 역할을 정립하기 위하여 교통량은 당해 지역 내의 수단별 통계 자료 및 기존 관련조사 보고서를 활용하고 차종별, 방향별 통과량에 대한 교통량을 조사 분석한다.
  - ③ 기존의 여객 이용실태 및 화물 유통체계를 감안한 장래 수송체계를 수립하기 위하여 수단별, 여객·화물별 지역 간 시·종점을 조사한다.
  - ④ 새로운 교통체계의 도입 및 개선에 따른 여객 성향조사, 이용실태 조사를 통하여 차종별 평균 승차인원, 수단별 통행량 및 새로운 수단에 대한 전환율을 분석하고 화물은 차종별·품목별 평균적재톤수, 차종별 공차율 등의 실태를 분석한다.
  - ⑤ 철도, 공로, 항공 등 수단별 운행비용 및 물류 시가가치를 분석하다.

#### 2.1.4 자연환경 현황조사

- (1) 자연환경 현황조사는 기본계획 및 노선선정 단계에서 실시하는 광역 환경조사와 실시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 실시하는 철도입지 주변 환경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.
- (2) 자연환경 현황조사는 시공에 의하여 발생되는 시설물 주변환경 변화의 예측, 환경보 전 대책의 입안, 대책의 효과확인 등을 위하여 실시하며 5를 따른다.

#### 2.1.5 문화재 지표조사

- (1) 노선구간의 문화유적을 조사하여 노선계획에 반영한다.
- (2) 향후 설계노선의 급격한 변동이 없는 대안노선의 범위까지 조사하여 후속 단계에서도 활용한다.

#### 2.1.6 각종 영향조사 결과 반영

- (1) 철도건설사업의 행정계획수립 단계에서는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 및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결과를 반영한다.
- (2) 철도건설사업의 설계단계에서는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및 도시교통정 비촉진법에 의한 교통영향분석·개선대책 수립 결과를 반영한다.

#### 2.1.7 철도 시스템 계획

- (1) 열차운행 최고속도, 여객 및 화물 혼용, 급행 및 완행, 열차 편성 등 열차운행 능력은 수송수요를 고려하여 수립한다.
- (2) 기존철도의 개량 및 복선화, 신선건설, 전철화, 장대레일화 등은 선로 구조물의 상태를 검토하여 계획한다.
- (3) 정거장배선은 시·종점 정거장, 중간정거장, 중간분기 정거장 등의 기능에 따라 통과 대피선 및 유효장을 고려하여 계획한다.
- (4) 선로구축물 및 궤도구조는 궤간, 레일, 침목, 체결구, 유·무도상의 유지보수 관리를 고려하여 계획한다.
- (5) 구조물은 여객열차와 화물열차의 속도향상과 서비스(안전성, 쾌적성, 안락성 등)를 고려하여 계획한다.
- (6) 열차폐색장치, 열차제어 장치 등 신호체계는 급행 또는 완행열차의 운행성능 및 열차 운행속도 향상을 고려하여 계획한다.
- (7) 전기체계는 비전철 또는 전철화, 열차운행 및 선로 시스템, 궤도구조 시스템 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.
- (8) 통신체계는 열차무선, 열차운전실 내부, 정거장 열차운용계획과 철도종합정보처리 설비 기능을 고려하여 계획한다.
- (9) 정거장시설은 여객취급, 화물취급, 철도서비스 향상 등을 고려하여 타 교통수단과 쉽고 편리하게 환승 연계할 수 있는 종합교통터미널 기능을 검토하여 계획한다.
- (10) 차량기지, 보수기지, 현장사무소 등 기타 부대시설은 철도운용 및 유지보수 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.

#### 2.1.8 건설기준 계획

- (1) 노선의 기능과 성능수준을 토대로 하여 설계속도를 정한다.
- (2) 설계속도와 열차운행계획에 따라 철도시스템을 선정한다.
- (3) 설계속도와 운행할 차량의 성능 특성에 따라 노반, 궤도, 신호, 전기, 통신 등 시설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적용기준을 선정한다.
- (4) 노반과 궤도의 선로구축물을 설계하기 위한 표준활하중, 곡선반경, 선로기울기, 건축 한계 등의 건설기준을 선정한다.
- (5) 시·종점 및 중간 분기정거장 등 그 기능적 특성에 따라 정거장 유효장 등 배선계획 기준을 선정한다.

KDS 47 10 15: 2019 철도계획

#### 2.1.9 노선선정 및 정거장 입지 선정

(1) 예비타당성 노선을 토대로 1/25,000지도로 현지 상황을 사전 조사하여 노선 및 정거 장입지를 계획한다.

- (2) 관련 계획 조사분석 결과와 현지조건을 고려하여 실제 실현 가능한 대안노선 및 정거 장입지를 계획한다.
- (3) 정거장은 여객 및 화물의 집산이 쉽게 이루어지도록 다른 교통수단과 연결되는 곳에 계획하되, 여객수와 화물수송량이 많은 지역에는 여객전용역과 화물전용역을 구분한다.
- (4) 대안노선 및 정거장입지는 철도건설규칙 등 관계규정에 적합하도록 한다.
- (5) 대안별 평면선형과 종단선형, 선로구조물을 선정하여 비교 계획한다.
- (6) 대안별 수송수요 예측에 따른 열차운영 계획을 비교 계획한다.
- (7) 대안별 선로구조물 등에 대한 노반공사비를 개략 산출하고 비교 계획한다.
- (8) 대안별 노선 및 정거장입지를 종합 비교 계획하여 관계기관 협의 후 최적대안을 선정하다.
- (9) 1/25,000지도로 계획한 최적대안을 1/5,000지도로 재검토하고 현지를 조사하여 측량 노선을 결정한다.
- (10) 대안별 노선의 입지는 주변 자연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최적노선을 선정한다.

#### 2.1.10 노반구조물 및 정거장 계획

- (1) 측량성과물을 토대로 선로평면선형과 선로종단선형을 계획한 후 현장을 답사하여 토 공, 교량, 터널, 정거장 위치 등 선로구조물을 계획하고 선로평면도와 선로종단면도, 정거장 평면도를 작성한다.
- (2) 선로평면 및 종단면도, 선로구조물 계획을 기준하여 연약지반 등 특수한 지역은 추가로 지반조사를 하고 수리, 수문, 지장물 등 현지조건을 조사하여 선로구조물 표준을 계획한다.
- (3) 선로구조물 표준은 기존철도의 표준도와 정규도, 철도건설규칙 등을 참고하여 노반공 사비를 추정하는데 필요한 표준공법을 설정하고 토공, 교량, 터널, 정거장 등 표준단 면도와 일반측면도, 평면도를 작성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.
- (4) 정거장은 열차운행계획에 따른 통과, 대피, 정차, 여객승강장, 화물적하장, 운전취급 및 영업시설, 지하도 광장 등을 고려하여 정거장 배선과 시설을 계획 한다.
- (5) 정거장시설은 1/1,000 평면도로 계획하여 정거장 선로평면도를 작성한다.

#### 2.1.11 열차 운행계획 검토

- (1) 수송수요에 따른 열차운행방식 및 소요 차량수, 1개열차 차량편성수, 선로용량, 열차 운행 최고속도, 표정속도 등에 따른 열차운행능력을 검토한다.
- (2) 최적노선으로 선정한 선형에 대한 열차운행능력을 검토하고 이에 따른 차량 소요판단

등 열차 운행계획을 수립한다.

#### 2.1.12 노반공사 수량산출 및 공사비 추정

- (1) 토공, 교량, 터널, 정거장 등 표준공법을 선정하여 노반공사 수량을 산출하고 사토량, 토취량 등 토공배분, 용지면적, 지장물 이설 등의 수량을 산출한다.
- (2) 노반공사 수량에 대한 표준단가를 추정하여 노반공사비를 산출한다.

#### 2.1.13 총 건설비 및 총 공사기간 추정

- (1) 건설사업에 따른 용지 및 지장물 보상비 추정, 노반, 궤도, 건물, 신호, 전기, 통신, 부대시설 등 세부사업별 건설비를 추정한다.
- (2) 세부사업별 공정을 검토하여 건설사업 총공정을 계획하고 연차별 투자계획을 추정한다.

## 2.2 타당성 조사(학술분야)

#### 2.2.1 일반사항

(1) 학술분야는 2.2.2~2.2.10을 기준으로 하여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적용한다.

#### 2.2.2 사회경제지표 현황 분석

- (1) 도시화 현황 및 토지이용 현황 분석
- (2) 총인구현황, 지역별 인구분포, 해당권역 인구현황 분석
- (3) 경제성장 및 자동차 보유대수 추이분석

#### 2.2.3 교통현황 분석

- (1) 도로, 철도, 항공, 항만 등 교통현황 분석
- (2) 여객 및 화물 수송 실적과 수송수단별 분담구조 분석
- (3) 해당권역의 교통현황과 수송실적 분석

#### 2.2.4 장래 여건 분석

- (1) 국토종합개발계획, 국가기간 교통망 계획, 지역사회 개발계획 등을 검토하여 장래 여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분석
- (2) 대상지역 및 주변지역에 대해 장래 사회 · 경제지표를 전망하고 분석

#### 2.2.5 장래 교통수요 예측

- (1) 교통수요 모형을 정립하고 통행발생, 통행분포, 수단분담 및 노선배정 등을 통해 장래 교통수요예측
- (2) 대안노선 및 정거장 입지별, 속도수준별, 교통수요예측

KDS 47 10 15 : 2019 철도계획

(3) 교통수요분담 및 연도별 수요예측

#### 2.2.6 경제성 분석

- (1) 경제성 평가기간, 기준연도, 사회적 할인율, 비용 및 편익 항목 등 기초지표의 결정
- (2) 차량운행비용 절감편익, 통행시간 절감편익, 교통사고 절감편익, 환경비용 절감편익 등을 검토
- (3) 편익/비용 비율(B/C Ratio), 순현재가치(NPV), 내부수익률(IRR) 등 경제적 타당성 분석기법과 판단기준 등을 검토
- (4) 건설비, 보상비 등 직접 건설비용과 개량 후 유지관리 등 시설운영에 따른 비용, 차량 소요량과 차량운행비용 등을 추정하여 검토
- (5) 민감도 분석과 위험도를 분석하여 검토
- (6) 투자시기에 따른 경제성 변화를 분석하여 최적투자시기 분석
- (7) 대안노선 및 정거장 입지별 경제성을 비교 분석하여 최적대안을 선정

#### 2.2.7 재무성 분석

- (1) 수송수입을 추정하여 손익분석과 재무상태 변동분석 등을 검토
- (2) 단기흑자연도, 누적흑자연도, 대체비용, 잔존가치 등을 검토하여 수익률을 분석
- (3) 대안노선 및 정거장 입지별 재무성 분석을 비교 검토하여 최적대안을 선정

#### 2.2.8 최적대안노선 세부분석 및 건설효과 분석

- (1) 최적대안노선의 기능성 정립과 대안노선의 속도수준별 비용 및 성능 분석
- (2) 대안노선 및 정거장 입지별, 경제성, 재무성 및 기타 효과분석에 따라 최적 대안노선 및 정거장 입지를 선정하고 총사업비 및 공사기간에 대한 연차별 투자계획 및 재원대 책 방안을 계획
- (3) 경제성, 재무성 세부검토 외 지역개발효과, 관광개발효과, 환경영향효과, 교통 접근성 변화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및 지역개발효과 등을 분석
- (4) 에너지 절감, 관련 사업발전, 기술발전 등 효과 분석

#### 2.2.9 재원조달방안 검토

- (1) 투입가능 자기자본 계획, 금융기관 등 타인자본 조달계획 등 투자재원 구성계획수립
- (2) 재원조달의 적정성 분석
- (3)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른 재원대책을 계획

#### 2.2.10 설명회 등 지자체 협의 및 자문 기타

(1) 설명회를 개최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지자체의 의견 청취와 민원해소 검토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며, 그러하지 않을 경우는 자자체의 의견청취와 민원해소방안을 계획

(2) 전문가의 자문과 발주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계획을 조정

#### 2.3 철도노반계획

#### 2.3.1 철도노반계획 일반사항

- (1) 노선 및 정거장입지는 철도건설규칙 등 관계규정에 적합해야 한다.
- (2) 관련 계획 조사분석 결과와 현지조건을 고려하여 노선 및 정거장입지를 대안별로 계획해야 한다.
- (3) 평면선형과 종단선형은 선로구조물 계획과 관련 분야 간 인터페이스를 고려하여 계획 해야 한다.
- (4) 대안별 비교는 선로구조물 등에 대한 노반공사비를 개략 산출하고 비교, 계획해야 한다.
- (5) 노선의 입지는 주변 경관 및 자연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최적노선을 선정해야 한다.
- (6) 토공, 교량, 터널, 정거장위치 등 선로구조물 계획을 반영한 지반조사를 시행하고, 특히 연약지반 등 특수한 지역의 지반조건 변화에 의한 사업비 변동이 예상되는 구간은 세부지반조사를 시행하여 수리, 수문, 지장물 등 현지조건의 조사결과와 지반조사 결과를 반영한 선로구조물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.
- (7) 정거장은 열차운행계획, 운전취급 및 영업시설, 건축시설계획, 각종시스템 시설계획, 교통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배선과 시설을 계획해야 한다.
- (8) 노선은 지역사회의 편익이 크고 사업주체의 이익 또한 고려해야 하므로 많은 비교안을 검토하여 최적의 노선으로 계획해야 한다.
- (9) 노선선정 시 경합관계에 있는 건설비와 운영비는 수송수요 및 열차운행계획을 고려한 노선을 선정해야 한다.

#### 2.3.2 친환경적 철도노선선정

- (1) 환경친화적인 철도건설을 할 수 있게 철도노선선정은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단계에 서부터 환경영향성을 검토해야 한다.
- (2) 철도노선계획수립을 위한 관련 계획 검토와 현장조사에는 철도, 구조, 토질, 교통, 환경, 문화재 등 관련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여 의견수렴을 거쳐 노선대안을 선정한다.
- (3) 초기단계 설계자문에서는 철도, 구조, 토질, 교통, 수자원, 시공 및 안전, 문화재, 환경 분야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이 참여하여 주요사항을 검토한다.
- (4) 노선설명회 등을 통해 주민 및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환경영향 저감대책 등을 수립한다.

#### 2.3.3 선형계획

(1) 평면선형

KDS 47 10 15: 2019 철도계획

① 평면선형은 노선의 기능과 설계속도에 따라 가능한 대안노선에 대하여 열차운행성 등 기술성과 경제성 검토 결과를 토대로 하여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적노선으로 계획해야 한다.

- ② 평면선형의 곡선반경은 설계속도에 따라 철도건설규칙 등 관계규정에서 정한 최소 곡선반경 이상이어야 한다.
- ③ 평면선형은 노선의 기능과 설계속도에 적합해야 하고, 노선 전구간의 평면 및 종단선형 상 균형성을 유지하며 장래 속도향상을 고려해야 한다.
- ④ 지형 상 상습 홍수범람 지역이나 대규모의 연약지반, 비탈길이가 긴 깎기 지형 등의 취약지형은 가급적 피해야 한다.
- ⑤ 급경사의 비탈지형으로 토사붕괴나 눈사태지역, 용수 등의 상시 습한 지역은 피하고, 가급적 양지지형으로 계획한다.
- ⑥ 주요 도로의 평면교차, 밀집시가지지역, 문화유적보전지역 및 대규모의 묘지지역은 최대한 피해야 한다.

#### (2) 종단선형

- ① 종단선형은 해당 노선의 설계속도 수준과 차량성능을 감안하여 표정속도를 향상시킬 수 있게 선정해야 한다.
- ② 종단선형은 전 구간에 걸쳐 평면 및 종단선형의 균형성을 확보할 수 있게 긴 구간 의 최급기울기나 수평기울기를 무리하게 설정하지 않도록 한다.
- ③ 선로의 시공기면은 가급적 자연지반 경사도를 감하여 지나치게 높거나, 얕지 않게 정해야 한다.
- ④ 선로의 시공기면은 하천의 최대홍수위와 도로 등 입체교차시설의 다리밑 공간높이를 확보할 수 있게 정해야 한다.
- ⑤ 하향최급기울기에서 상향기울기 변경점설정은 가급적 피하고, 부득이한 경우에는 양쪽 기울기 차이가 최소화되도록 설정해야 한다.
- ⑥ 기울기의 변경점은 평면선형의 직선 또는 원곡선 구간에 설치한다.

#### 2.3.4 구조물 계획

#### (1) 교량 계획

- ① 하천지역에 설치되는 교량은 KDS 51 40 05에 따라 경간장 등을 정해야 한다.
- ② 교량은 해당 하천의 하천정비계획 등 수리·수문 조사결과에 따라 경간장과 교량 의 높이와 길이를 정해야 하며, 하천정비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하천은 수리·수문 조사를 시행해야 한다.
- ③ 하천정비계획은 수립되었으나, 하천정비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하천은 하천정비계획을 토대로 하여 제방의 여유고 등을 확보할 수 있게 교량을 계획해야 한다.
- ④ 교량은 가급적 하천의 유수방향에 직각되게 계획하여 홍수 시 등에 유수 상 지장을 최소화하게 해야 한다.
- ⑤ 교량 전후에 작은 교량이나 구교를 연속해서 설치하는 것을 피할 수 있게 경간길

- 이나 교량길이를 정해야 한다.
- ⑥ 교대 등 하천공작물을 제방에 설치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. 부득이한 경우 제방의 안정이 확보 될 수 있는 조치를 해야 한다.
- ⑦ 하천의 종방향을 따라 설치되는 교량의 경우, 교각이 하천의 전체 폭에 걸쳐서 배치되지 않게 계획해야 한다.
- ⑧ 다리밑 공간높이는 하천의 경우 KDS 51 40 05를, 도로의 경우는 KDS 44 20 25에 따라야 하며, 해상 등 선박이 통행하는 교량은 이를 고려하여 교량을 계획해야 한다.
- ⑨ 농경지의 농로와 마을간 도로에 설치되는 교량은 농경용 차량·장비와 농산품 운 반차량이 원활하게 통행할 수 있게 교량의 경간과 다리밑 공간높이를 정해야 한다.
- ① 주거지역에 근접한 교량은 환경영향 평가결과 등을 토대로 하여 경관성 및 환경성을 최적화할 수 있게 해야 한다.

#### (2) 터널 계획

- ① 터널은 단층, 파쇄대, 퇴적토, 편압 등 취약한 지형이나, 계곡을 피하여 가급적 능선을 따라 그 위치를 정해야 한다.
- ② 터널의 길이는 평면곡선과 종단기울기, 갱구부의 편압이나 깎기 토량, 열차운행상 안정성과 유지보수성을 검토하여 정해야 한다.
- ③ 터널구간의 선로기울기는 배수 및 자연환기를 위해 가급적 한 방향 기울기로 해야 하며 부득이 양방향기울기로 할 경우 배수와 환기가 원활하게 해야 한다.
- ④ 터널의 갱구는 계곡부의 수로 등을 피하고, 갱문 뒤의 비탈길이를 가급적 짧게 해야 하며, 지형상 낙석 등이 예상되는 구간은 터널길이를 길게 하거나 낙석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열차안전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.
- ⑤ 터널내의 배수시설은 배수로 수위를 시공기면보다 낮게 하여 터널내배수가 용이하게 해야 한다.
- ⑥ 시가지나 집단마을 등의 하부를 통과하는 터널은 공사 중이나 열차운행 중에 생활 환경 또는 터널의 안전성에 지장이 없도록 터널의 구조와 시공법 등을 정해야 한 다
- ⑦ 1 km 이상의 터널은 안전성 분석결과에 따라 방재시설에 대한 검토를 해야 한다.
- ⑧ 터널단면은 열차고속주행에 따른 공기압 영향과, 곡선구간에서 선로중심간격 및 건축한계의 변화를 고려하여 정해야 한다.

#### (3) 정거장 계획

- ① 정거장위치는 선형 상 철도건설규칙 등 관계규정에서 정한 범위내에서 가급적 수 평의 직선구간으로서 장래 확장 개량이 가능하고, 노선 및 정거장의 기능과 규모 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배치할 수 있게 선정해야 한다.
- ② 정거장은 노선의 기능과 열차운행계획 등에 따라 시·종착정거장, 중간 또는 분기 정거장으로 구분하여 여객과 화물혼용이나 여객전용설비를 해야 한다.

KDS 47 10 15 : 2019 철도계획

③ 정거장 부지규모는 최종 목표연도를 기준으로 하여 계획하되 장래 확장 가능성을 감안해야 하며, 정거장설비는 장·단기로 구분하여 단계별 건설계획을 검토해야 한다.

- ④ 정거장시설은 기능과 교통영향평가에 따라 계획하며 여객접근과 편의시설, 운전취급과 열차제어설비, 환승 및 연계 교통시설, 역세권 개발 등을 감안하여 시설종류와 규모를 검토해야 한다.
- ⑤ 시·종점에 위치하는 정거장은 차량의 차량기지 진출입을 고려하여 시설의 종류와 규모를 검토해야 한다.
- ⑥ 정거장의 배선은 열차운행계획에 따라 열차운행이 원활하도록 계획해야 한다.
- ⑦ 차량기지와 보수기지 등은 그 기능과 취급규모에 따라 시설의 종류와 규모를 계획 하여, 철도운영성을 최적화해야 한다.

#### 2.3.5 자재선정

(1) 모든 공사용 자재는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표시품(이하 'KS 표시품'이라 한다)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지닌 자재이어야 하며,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녹색제품 또는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이 설계에 반영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.

#### 2.4 사업시행 환경조사

#### 2.4.1 일반사항

- (1) 사업시행 환경조사는 환경영향평가, 교통영향평가, 수리·수문조사 외 실시설계 및 시 공단계에서 철도입지주변을 조사하는 것이다.
- (2) 사업시행 환경조사는 목적물의 건설에 영향을 미치거나 이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항에 대한 조사로서 지장물 조사, 지표수리시설과 지하수 부존 특성조사, 공사용설비조사, 보상 및 관계 법령, 지형조사, 환경조사, 사토장 및 토취장조사 등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.

#### 2.4.2 지형 및 개발현황조사

- (1) 철도건설에 영향을 미치거나 공사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형을 지형도나 항공사진 등을 이용하여 분석하고 현장답사를 통하여 조사한다.
- (2) 불안정 지형이나 재해가 예측되는 지형 즉, 애추(talus), 붕괴지, 산사태로 매몰된 과거 의 수로, 홍수 등으로 발생한 장소나 이러한 우려가 있는 지형은 자료조사, 항공사진 판독, 지표지질조사 및 유사공사 시공사례 조사 등을 시행한다.
- (3) 자료조사는 지형도(1/5,000~1/50,000), 지질도, 응용지질도, 산사태위험도, 수문기상자료, 인접지역 시추자료, 유사공사의 시공사례 등을 조사한다.
- (4) 노선경유지의 철도, 도로, 하천 기존 도시 등의 시설현황과 각종 개발계획현황을 조사

한다.

#### 2.4.3 측량과 지반조사

(1) 측량과 지반조사는 KDS 47 10 20을 적용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.

#### 2.4.4 생태 및 환경현황조사

- (1) 생태 및 환경현황조사는 기본계획 및 노선선정 단계에서 실시하는 광역 환경조사와 기본계획수립 후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 철도입지 주변 환경현황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다.
- (2) 환경현황조사에서는 해당 지역의 도시계획, 각종상위 계획에 대한 조사를 해야 한다.
- (3) 광역 환경현황조사는 구조물시공 및 사용에 의한 자연환경 및 사회환경에 대한 악영 향을 최소로 줄이기 위하여 광범위하게 실시해야 하며,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.
  - ① 수리수문: 지형 및 하곡의 성상, 하천유량, 지하수위, 물이용 현황,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타 공사의 유무, 대수층의 존재 여부
  - ② 기상: 기온, 강우, 강설, 바람 등의 영향, 눈보라와 돌풍의 발생빈도 및 현황
  - ③ 재해: 산사태, 눈사태, 붕괴, 지진, 홍수 등의 발생지 및 피해 정도
  - ④ 토지: 토지이용 현황, 주요 구조물, 법에 의한 용도구분의 범위
  - ⑤ 교통: 기존철도, 도로 규격 등의 교통시설현황
  - ⑥ 공공 시설물: 학교, 병원, 요양소, 자연공원 등 공공시설물의 위치 및 규모
  - (7) 문화재: 사적, 문화재, 천연기념물 등의 위치, 규모 및 법 지정 현황
  - ⑧ 지하자원: 권리설정 현황, 광산현황 및 광물의 부존상태 등
  - ⑨ 광산개발: 광산의 갱도나 폐갱도와 지하공동의 위치 및 규모
  - ⑩ 기타: 동식물의 분포상태 및 경관, 지역 개발계획 등
- (4) 자연환경현황조사는 시공에 의하여 발생되는 시설물 주변환경 변화의 예측, 환경보전 대책의 입안, 대책의 효과확인 등을 위하여 실시하며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.
  - ① 물이용 현황
    - 가. 지표수 및 지하수의 수질, 수원 현황, 탁수발생 가능성이 있는 인접공사, 유로 및 수위 변화 가능성
    - 나. 시공 중 발생하는 용수나 건설공사가 주변의 지표수 및 지하수에 미치는 영향예측
    - 다. 건설공사로 인하여 갈수가 예상되는 우물, 저수지, 용천, 하천 등은 그 분포, 수량의 계절적 변화, 이용상황 등을 조사하여 갈수대책의 자료로 이용
  - ② 소음 및 진동: 소음 및 진동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주변현황
  - ③ 지반과 구조물의 변형: 건물, 구조물 상태, 지형 및 지질, 토지이용 현황, 구조물의 변형발생 가능성이 있는 인접공사
  - ④ 수질오염: 하천의 상태, 배수 상태, 수로의 상태, 공사로 인한 폐수 및 폐유 발생상 태, 법규제 상태

- ⑤ 대기오염: 대기중의 유해물, 기상현황
- ⑥ 교통장애: 구조, 교통량 혼잡상태, 도로관리자, 도로주변의 환경 등

#### 2.4.5 지장물 조사

- (1) 건설공사 전에 지역 내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상수도 및 하수도관, 송유관, 통신 및 전력 케이블, 도시가스관, 지하통로 등의 지하지장물의 종류, 심도 및 크기를 파악하여 안전한 시공을 할 수 있도록 한다.
- (2) 시추조사 시는 관계 기관으로부터 지장물 매설도를 구하여 참조하고 반드시 터파기나 지구물리탐사를 이용하여 지하 지장물의 유무를 확인하고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시행한다.
- (3) 사업노선에 저촉되는 지상지장물 및 지하매설 지장물을 관계기관과 협의, 이설 및 보상이 가능토록 상세히 조사해야 한다.
  - ① 지상지장물: 송유관, 광케이블, 철탑, 통신시설, 전기시설, 공공시설물, 분묘 등
  - ② 지하매설 지장물: 전기, 통신, 송유관, 상하수도, 가스 등
- (4) 조사된 지장물은 시설물 관리기관별로 정리하여 필요한 협의를 할 수 있게 자료를 작성해야 한다.

#### 2.4.6 골재원 조사

- (1) 골재원 조사는 사용할 골재종류별로 매장량, 생산가능성 향후 여건변화 등 소정공사 기간중 소정량의 공급이 가능한지를 검토해야 한다.
- (2) 골재원은 품질기준에 적합해야 하고, 운반거리와 운반방법을 조사 해야 한다.
- (3) 터널이나 흙깎기에서 발파암 등이 발생될 경우, 콘크리트 굵은 골재나 혼합골재, 쇄석 골재 등으로 발생되는 암석류의 사용을 검토해야 한다.
- (4) 콘크리트는 레미콘의 구입과 현장생산에 대하여 품질확보와 시공성, 경제성을 검토해야 한다.

#### 2.4.7 토취장 및 사토장 조사

- (1) 공사시행성과 경제성을 감안하여 토취 및 사토장을 선정해야 하며 주변의 지형, 운반 방법과 거리, 운반도로상태, 교통규제와 교통안전상의 특성, 환경적인 조건, 토취 및 사토 후 처리방안, 법령에 의한 규제 등을 사전에 조사해야 한다.
- (2) 공사기간 중 소정량의 토사를 처리할 수 있어야 하며, 국토교통부의 토석정보공유시 스템(TOCYCLE)의 활용과 지역 내 공사현장의 토석정보도 조사해야 한다.
- (3) 토취장은 시추조사 등으로 품질기준에 적합여부를 확인해야 하고, 인허가 기관의 인 허가와 토지소유자 및 지역주민의 동의 가능여부를 조사해야 한다.
- (4) 사토장은 지반의 안전성, 토사유출, 환경상 피해 발생여부를 조사해야 한다.
- (5) 토취장과 사토장은 토취 및 사토 완료 후 경관 및 환경생태 보존방안에 대하여 조사 해야 한다.

#### 2.4.8 공사용 시설 및 설비조사

- (1) 공사용 시설 및 설비로는 터널입구 설비, 환기 및 집진설비, 운반설비, 골재 및 콘크리트 플랜트 설비, 수배전 설비, 용배수 설비, 임시건물 설비 등이 있으며, 공사용 설비계획에 필요한 자료를 얻기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조사한다.
  - ① 지형과 지질 및 기상: 설비기능 저해 혹은 위험 가능성이 있는 지형, 지질 및 기상
  - ② 주변환경: 주변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공사용 설비의 소음, 진동, 배수 및 교통
  - ③ 전력의 사용: 기가설 송배전선의 용량, 주파수, 전압, 수변전의 난이, 수전소요시간, 개략산출비용, 발전설비 등의 동력원, 공사용 장비운용시의 소요 전력량
  - ④ 화약고 설치계획: 화약취급에 관한 법률이나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
  - ⑤ 용배수: 콘크리트 혼합용수, 음용수, 기타 잡용수의 취수조건, 터널시공에 수반한 용출수의 처리, 세척수의 방류조건
  - ⑥ 자재 및 버력 운반 등에 필요한 공사용 도로, 궤도 등의 규격, 교통량, 안전, 교통 규제의 현황 및 주변도로 이용현황
  - ① 노무자재: 터널 외부 설비에 관계되는 콘크리트용 골재, 굳지 않은 콘크리트, 기타 자재의 공급경로, 공급사정의 현황 및 관리방법, 노무사정의 현황
  - ⑧ 법령, 기타에 의한 규제: 인접 지역의 공사 유무, 규제사항

#### 2.4.9 토지 등 보상권 조사

(1) 건설공사에 있어서의 보상대상 사항은 용지취득에 수반되는 토지, 건물, 수목 등의 매수 및 이전, 각종 권리(지상권, 지하권, 수리권, 온천권, 어업권, 광업권, 채석권 등)의침해, 농림 및 어업 수익의 감소, 영업손실 등이 있고, 이들의 보상을 위한 자료를 얻기 위하여 착공 전의 제반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조사를 한다.

#### 2.4.10 사업시행 관계 법령 조사

- (1) 건설공사에 있어서 법령에 의한 규제를 받는 경우에는 공사에 미치는 영향의 범위, 이에 대한 규제의 정도, 수속, 대책 등에 관한 관계법을 조사해야 한다.
- (2) 공사시행과 관계하여 국내법, 국제협약 등 모든 표준 및 기준은 계약일 현재 유효한 최신본을 적용해야 하며, 공사시행 중 개정되는 경우 개정본 적용여부는 협의 후 결 정해야 한다.

## 2.4.11 사업시행(사후) 환경영향 조사

- (1) 철도건설법 제2조 제1항 및 제2항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 항에 따른 철도 또는 고속철도의 건설사업 중 4 km 이상이거나 철도시설의 면적이 10만  $m^2$  이상의 경우에는 환경영향을 조사 하고 그 결과를 승인기관의 장과 환경부장 관에게 통보해야 한다.
- (2)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해당 사업으로 인한 주변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조치

KDS 47 10 15 : 2019 철도계획

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승인기관의 장과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고 필요 한 조치를 해야 한다.

- (3) 사후환경영향조사의 조사내용, 조사방법, 조사주기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 관이 정한 고시 내용으로 한다.
- (4) 철도건설 사업의 사후환경영향조사 기간은 사업 착수 시부터 사업 준공 후 3년까지로 한다.

#### 3. 재료

내용 없음

#### 4. 설계

#### 4.1 설계 일반사항

#### 4.1.1 일반사항

- (1) 기본 원칙
  - ① 노반시설은 설계속도에 대하여 안정성, 기술성, 시공성, 경제성이 확보되고, 노선의 기능과 성능이 적합해야 한다.
  - ② 노반시설은 차량한계내의 차량이 안전하게 운행될 수 있도록 건축한계를 저촉하지 않아야 한다.
  - ③ 노반시설은 환경친화적으로 설계해야 한다.
  - ④ 노반시설은 사용기간 중 화학적, 물리적 작용에 대하여 충분한 내구성을 확보해야 한다.

#### (2) 하중

- ① 노반시설의 설계는 시공 중, 완성 후 구조물에 작용하는 모든 종류의 하중에 의한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.
  - 가. 재료, 자연환경의 하중과 같은 영구하중
  - 나. 빈도에 관계없이 변동성 있는 하중
  - 다. 차량과 보행자 같은 준영구적인 하중
  - 라. 교통 또는 자연 환경 재해상 우발적인 하중
- ② 열차하중은 표준 활하중을 기준으로 하며, 충격과 함께 열차운행에 의한 피로의 영향과 따로 정한 설계기준 등 관계 규정을 따른다.
- ③ 장대레일 적용구간의 구조물은 온도변화에 대한 고려를 해야 한다.

#### 4.1.2 철도시설 계획

- (1) 일반사항
  - ① 철도시설의 계획은 해당 노선의 기능과 성능, 안전성과 승차감을 확보할 수 있도

록 계획해야 한다.

- ② 시설물형식은 시공 시 품질관리가 용이하고, 완공 후 유지관리가 용이한 단순한 구조형식을 적용할 수 있도록 계획해야 한다.
- ③ 주위의 자연환경과 어울리는 환경친화적인 계획을 하고, 특히 소음·진동이 적거 나 또는 소음·진동 저감방안을 검토해야 한다.
- ④ 철도운행으로 인하여 인접구조물에 미치는 영향이 예상될 경우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는 계획을 해야 한다.
- ⑤ 구조물의 변형 및 안정성과 관계되는 규정 외에 재료의 거동, 고속차량운행에 따른 공진 등 구조물과 차량의 운행조건이 만족되는 계획을 해야 한다.
- ⑥ 원활한 철도시스템 운영을 위한 인터페이스를 고려하여 계획해야 한다.
- ⑦ 도로, 하천, 기타 기존시설물과 교차 되는 경우에는 교차조건에 대하여 면밀히 검 토 후 입지여건을 고려하여 계획해야 한다.
- ⑧ 고속철도 계획 시 운행에 따른 다음 사항을 특별히 고려하여 계획해야 한다. 가. 열차풍의 영향
  - 나. 공진발생의 영향
  - 다. 터널구간의 공기압 영향

#### (2) 인터페이스

- ① 노반구조물은 궤도구조를 고려하여 계획해야 한다.
- ② 차량형식과 구조물은 열차 속도유지, 승객의 쾌적성 및 안락성 등을 고려하여 계획 해야 한다.
- ③ 전기철도, 전차선로, 전력설비시스템 등을 고려하여 계획해야 한다.
- ④ 열차폐색장치, 열차제어장치 등 신호체계는 열차운행속도를 고려하여 계획해야 한다.
- ⑤ 전기체계는 열차운행 및 선로시스템, 궤도구조시스템 등을 고려하여 계획해야 한다.
- ⑥ 통신체계는 열차운용계획과 철도종합 정보처리 설비기능을 고려하여 계획해야 한다.
- ⑦ 정거장시설은 타 교통수단과 환승, 연계할 수 있는 기능을 검토하여 계획해야 한다.
- ⑧ 부대시설은 철도운용 및 유지보수 등을 고려하여 계획해야 한다.
- ⑨ 노반시설의 방재설비는 차량 및 열차운행조건을 감안하여 계획해야 한다.

#### (3) 유지관리

- ① 세부적인 설계과정에서 필요할 경우 유지관리에 필요한 최소기준을 제시해야 한다.
- ② 방재설비는 차량 및 열차운행조건에 따라 방재기준을 정하고, 안정성과 경제성을 종합적으로 분석 검토하여 노반구조물의 방재설비를 계획해야 한다.
- ③ 유지관리용 접근로 및 방호울타리
  - 가. 유지관리용 접근로

토공, 교량, 터널 등의 구조물에 차량이 접근할 수 있는 진입로 설치는 가급적 기존도

KDS 47 10 15 : 2019 철도계획

로를 최대한 활용하고, 신설할 경우는 용지 및 공사비를 최대한 절감할 수 있도록 계획해야 한다.

#### 나. 주차장

접근로 종점부에는 점검차량과 유지보수용 자재를 적치할 수 있는 주차장을 설치하되 대상구조물에서 이용이 편리한 위치를 선정해야 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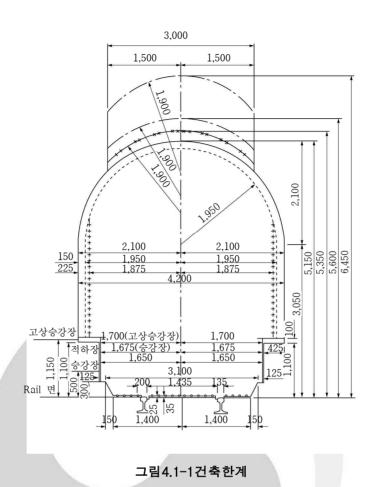
#### 다. 방호울타리

- (가) 열차안전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안전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한 방호울타리를 설치해야 한다.
- (나) 깎기나 쌓기부, 교량구간은 용지경계선에, 터널갱구부 주위는 비탈면에 맞추어 설치해야 한다. 다만, 다른 구조물과 접속개소는 연속설치하고 인근 주민의 통행 등 현지여건을 고려하여 설치해야 한다.
- (다) 교량하부에 쓰레기 등 유해적치물 등을 방치할 수 있는 장소에는 교량 방호울타 리를 설치해야 한다.

#### 4.1.3 허용한계

- (1) 철도의 건축한계 일반
  - ① 건축한계 내에서는 건물, 기타 건조물을 설치하지 못한다. 다만, 가공전차선 및 그 현수장치와 작업상 필요한 일시적 시설로서 열차 및 차량운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.
  - ② 직선 선로구간 건축한계는 그림 4.1-1에 따른다.

철도계획 KDS 47 15 05 : 2019



③ 전기동차 전용선인 경우에는 표 4.1-1을 따른다. 다만, 도시철도와 연결 되는 경우에는 연계성을 고려하여 이에 맞도록 해야 한다.

표4.1-1전기동차전용선의건축한계및구축한계(단위:mm)

항목	구	<u>가</u> 별	폭	높이	비고
지상 건축한계		・고가	3,600	5,300	
신국인계	ス	하	3,600	4,800	높이: RL기준
	지상	・고가	3,600	5,800	]
구축한계	지하	단선	4,700	4,850	
	\\ \\ \\ \\ \\ \\ \\ \\ \\ \\ \\ \\ \\	복선	4,100	4,850	폭: 중앙기둥제외

## ④ 곡선구간 건축한계

가. 곡선 선로구간 건축한계의 폭은 직선구간

건축한계에서 식 (4.1-1)에 의하여 산출한 치수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. 다만, 가공 전 차선과 그 현수장치를 제외한 상부의 한계는 그러하지 않는다.

KDS 47 10 15: 2019 철도계획

$$W = \frac{50,000}{R}$$
(전기동차 전용선인 경우  $\frac{24,000}{R}$ ) (4.1-1)

여기서, W: 궤도중심의 각 측으로 확대할 치수(mm) R: 선로 곡선반경(m)

- 나. 위의 규정에 의한 확대치수는 완화곡선구간에서 이를 체감해야한다. 완화곡선이 없는 경우에는 원곡선 시·종점에 접속한 직선 구간 26 m 이상의 길이에서 이를 체감해야 한다.
- 다. 곡선구간 건축한계는 캔트에 따라 경사된 건축한계로 해야 한다.
- 라. 철도를 횡단하는 시설물이 설치되는 구간의 건축한계의 높이는 전차선 가설높이에 지장이 없도록 건축한계의 높이를 일반철도는 RL에서 7,010 mm 이상, 고속 철도는 RL에서 8,050 mm 이상 확보해야 한다. 다만, 기존선 개량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승인을 받아 전차선 가설에 지장이 없는 범위로 축소할 수 있다.

#### (2) 도로횡단 시설한계

- ① 도로횡단 시설한계(도로의 구조·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18조.)의 통과높이 H는 4.5 m로 한다. 동계 적설에 의한 한계높이의 감소 또는 포장 덧씌우기 등이 예상되는 경우를 고려하여 5.0 m 이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. 다만, 부득이한 경우에는 도로의 구조·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축소할 수 있다.
- ② 도로횡단 철도구조물이 규정된 다리밑 공간을 확보한 경우에도 적재높이 제한 위반차량으로 인한 충격이나 파손이 우려되는 개소는 차량통과한계틀을 설치해야한다.
- ③ 도로횡단 구조물의 다리밑 공간이 4.7 m(고속철도 5.0 m) 미만의 개소에는 차량통 과한계를 및 차높이 제한표지를 설치하되 전후 고가도로 또는 보도육교 등 현지여 건을 감안하여 설치여부 결정해야 한다.
  - 가. 차량통과한계를 설치위치
    - (가) 교량: 전방 20 m~50 m 부근에 지형여건 감안 설치
    - (나) 통로박스: 전방 5 m~15 m 부근에 지형여건 감안 설치
  - 나. 차량통과한계틀 설치높이는 구조물의 실제 통과높이보다 0.1 m 낮게 설치한다.
  - 다. 차높이 제한표지에는 구조물의 실제 통과높이보다 0.2 m 낮게 표기한다.
  - 라. 차높이 제한표지는 도로교통법의 관계 규정을 따른다.
- (3) 하천 등의 다리밑 공간
  - ① 교량 밑의 통행에 사용되는 공간 또는 교량 밑에서 수위(水位)까지의 공간높이를 말하며, 배가 지나다니는 수로 위의 공간높이는 다음과 같다.
    - 가. 범선 또는 소기선 통과 ····· 최고수면에서 30 m
    - 나. 대기선 군함 ····· 최고수면에서 45 m~60 m
    - 다. 소증기선 ······ 최고수면에서 4.5 m
    - 라. 폰툰(pontoon), 바지선(barge) ····· 최고수면에서 3.0 m

② 교량 계획 시 조사한 계획 홍수위가 주거더 밑에 있도록 계획해야 한다. 선박의 운항이 없는 하천의 경우에는 하천설계 기준의 계획홍수량에 따라 표 4.1-2의 값을 표준으로 하되, 하상변동에 의한 수위상승과 만곡부의 수위상승, 수리계산 오차등을 고려하여 제방여유고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.

표4.1-2계획홍수량에따른다리밑공	곡가	밑	리	루디	따	수량이	호=	획	1-2계	<b>Ŧ</b> 4.1	
--------------------	----	---	---	----	---	-----	----	---	------	--------------	--

계획홍수량( $m^3/\mathrm{sec}$ )	다리밑공간(m)
200 미만	0.6 이상
200 이상 ~ 500 미만	0.8 이상
500 이상 ~ 2,000 미만	1.0 이상
2,000 이상 ~ 5,000 미만	1.2 이상
5,000 이상 ~ 10,000 미만	1.5 이상
10,000 이상	2.0 이상

- 1) 하천에서의 다리밑 공간은 홍수위로부터 교각이나 교대 중 가장 낮은 위치의 받침하면까지의 높이를 말하며, 라멘교의 경우에는 헌치 하단까지의 높이를 말한다.
- 2) 다만, 계획홍수량이 50  $m^3/{
  m sec}$  이하이고 제방고가 1.0 m 이하이고 다리밑 공간은 0.3 m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.

#### (4) 지하 구조물의 최소토피

- ① 철도 관련 지하시설물의 윗면에서부터 도로면, 지상면, 하천 하상고까지의 최소토 피는 다른 지하매설물의 영향이 철도 운행에 미치지 않고, 철도시설물의 보호 및 안전이 확보되어 일정 이상의 토피를 유지 할 수 있도록 계획·설계해야 한다.
- ② 도로 및 지상부 최소토피는 기존도로 지하에 기 매설되어있는 시설물의 안전을 고려하고, 그 이외의 구간은 장래시설물의 설치 필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, 도로면 또는 지면으로부터 지하구조물 윗면까지 일정 이상의 토피를 유지 할 수 있도록 계획해야 한다. 다만 현지여건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도로개구부 등 지형상 특별한 경우에는 철도 시설물의 성능을 저하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관리청과 협의하여 최소토피를 조정할 수 있다.
- ③ 하천을 횡단하는 철도 지하구조물 윗면까지 최소토피는 하천의 장래 계획 및 홍수 시 세굴 등을 고려하여 하상고(저수로 기준)와 일정한 깊이를 유지 할 수 있도록 계획해야 한다.
- ④ 최소 토피에 관한 설계기준은 관계 법령 및 설계기준의 각 장에서 정한 기준을 따른다.

#### 4.2 설계의 단계별 업무구분

#### 4.2.1 일반사항

(1) 철도노반공사의 설계업무는 사업추진단계별로 과업목적과 특성에 맞게 표준화하여 설

계성과의 품질향상과 설계업무의 효율화 및 내실화 할 수 있게 해야 한다.

- (2) 조사업무는 현지답사 각종 자연환경조사, 자료수집 등 각 설계용역단계에서 명시한 내용들을 조사·검토 분석하고, 그 결과를 종합해야 한다.
- (3) 계획업무는 조사업무를 토대로 하여, 실행 가능한 여러 대안을 계획하고, 비교·분석 하여 과업목적에 적합한 최적안을 선정할 수 있게 해야 한다.
- (4) 설계업무는 조사와 계획업무의 결과에 따라 선정된 최적안을 바탕으로 하여 과업목적에 적합한 시설물과 부대사항 등을 기술적으로 구체화 해야 한다.
- (5) 설계도면은 과업계획에서 제시된 목적물의 형상과 규격 등을 표현하기 위해 설계자가 작성한 도면으로서 물량산출과 내역산출의 기초가 되고, 시공자가 시공상세도를 작성할 수 있는 모든 지침이 표현되어야 하며, 복잡한 부분을 판독할 수 있는 상세 설계 도와 구조계산을 포함해야 한다.
- (6) 시공상세도면은 시공자가 목적물의 품질확보와 안전시공을 할 수 있게 공사진행 단계 별로 요구되는 시공방법과 순서 등을 설계도면을 근거로 하여 작성해야 하며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## 4.2.2 설계의 단계별 업무내용

- (1) 일반사항
  - ① 설계는 사업추진단계에 따라 타당성조사(기본계획 포함), 기본설계, 실시설계를 순 차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하며 다만, 공사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타당성조사와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를 함께 시행할 수 있다.
  - ② 타당성조사와 기본설계 또는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함께 시행할 경우 통합 과업 지시서는 개별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작성해야 한다.
  - ③ 철도토목분야의 설계는 설계상 연계성이 많은 궤도, 건축, 전기, 통신, 신호 등 관계 기술분야의 설계를 동시에 시행하여 기술적 연계성을 최적화할 수 있게 해야 한다.
- (2) 설계업무의 구분
  - ① 타당성조사(기본계획 포함)

대상사업의 기본구상을 토대로 하여 사업목표와 이를 위한 수단을 설정하여 경제적 및 기술적, 사회적, 환경적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시행의 타당성을 판단하며, 목적시설물의 실현방법에 대한 여러 대안을 비교·검토하여 최적대안을 선정한 후 이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, 기본설계에 대한 기본방침과 기술자료를 작성하는 단계

- ② 기본설계
  - 타당성조사를 토대로 하여 목적 시설물의 규모, 배치, 형태, 공사방법, 공사기간, 공사비 등에 대한 일반적인 조사 및 분석, 비교·검토를 거쳐 최적안을 선정하고, 주요시설에 대해서만 예비설계를 수행하며, 설계기준과 설계조건 등 실시설계에 필요한 기술자료를 작성하는 단계
- ③ 실시설계

철도계획 KDS 47 15 05 : 2019

기본설계를 토대로 하여 목적 시설물의 규모, 배치, 형태, 공사방법, 공사기간, 공사비, 유지관리 등에 대한 세부조사 및 분석, 비교·검토를 거쳐 최적안을 선정하고, 상세 설계를 수행하며, 시공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술자료를 작성하는 단계

④ 설계용역수행을 위한 각 단계별 업무는 조사업무와 계획업무, 설계업무로 표 4.2-1 와 같으며,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의한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를 시행해야 한다.

표4.2-1설계용역수행을위한각단계별업무 ○:수행하는업무 △:필요시수행하는업무

	구분	<u>1</u>	타당성 조사	기본 설계	실시 설계	비고
	1. 관련 계획 조	사 및 검토	0	Δ	Δ	
	2. 현지조사/답시		0	0	0	
조	3. 수리·수문조 (기상, 해상, 선		O (△)	O (△)	Δ	
	4. 교통량 및 교	통시설조사	0	Δ	Δ	
사	5. 환경영향조사	(문화재조사)	Δ	0	Δ	
업	6. 측량	- 1/	Δ	0	0	
무	7. 지질 및 지반	조사(폐광, 지하공동)	Δ	0	0	
	8. 지장물, 구조	물조사(지하매설물)		0	0	
	9. 토취장, 사토	장, 재료원		Δ	0	
	10. 용지조사		,	Δ	0	
	1. 전 단계 성과	물 검토		0	0	
	2. 수송수요 예측	0	1/4			
	3. 철도시스템 김	검토(인터페이스 검토)	0	(△)	(△)	
	4. 건설기준/설계	기준 검토	0	0	0	
	C 1 11 11 T1	노선대안	0			
계	5. 노선선정	최적 노선선정	Δ	0	Δ	
획	6. 정거장선정	경유지 선정	0			
	6. 경기경신경	위치선정	Δ	0	Δ	
업	7. 구조물계획(타	널, 교량 등)	Δ	0	0	
무	8. 열차운행계획	검토	0	Δ	Δ	
	9. 경제성, 재무분석		0			
	10. 환경 및 교통영향성 검토		0	0	0	
	11. 수리 • 수문검	토	Δ	0	0	
	12. 관계기관 협의	<u></u>	0	0	0	
	13. 민원 검토		0	0	0	

	구분	타당성 조사	기본 설계	실시 설계	비고
	1. 개략설계	0			
설계 업무	2. 예비설계		0		
	3. 상세설계			0	

#### 4.3 내진설계

(1) 기본방침

KDS 24 17 10 (1.2)를 따른다.

- (2) 설계일반
  - ① 내진등급 철도 구조물은 구조물의 중요도를 고려하여 표 4.3-1과 같이 내진등급을 분류한다.

#### 표4.3-1철도의내진등급

내진등급	구분내용	설계지진의 평균재 현주기
내진 1등급	설계지진 발생 후에도 교통수단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시설물	1000년 (단, 열차주행안전성 검토는 100년)
내진 2등급	내진1등급에 속하지 않는 철도구조물	500년

- ② 철도의 내진설계 시 검토해야 할 사항
  - 가. 기본적인 검토사항
    - (가) 내진등급여부
    - (나) 지반의 분류
    - (다) 지진구역계수 결정
    - (라) 재현주기별 지진 위험도계수결정
    - (마) 설계지진의 응답스펙트럼 결정
  - 나. 전반적인 검토 사항
    - (가) 열차 주행안전성 검토
      - ② 설계지진 발생 시 감속된 상태로 운행하는 열차의 주행안전성을 보장하는 것으로 철도 구조물의 변형, 응력, 진동 및 궤도 틀림 등이 열차의 안전성을 위협해서는 안 되며, 탄성영역의 거동이 지배적이어야 한다. 또한 기초지반의 영구적인침하나 융기, 액상화를 검토하여 열차주행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.
      - ① 구조물 진동에 의한 열차의 탈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열차속도별 허용침하량을 만족해야 하며 교축 직각 방향에 대한 충분한 강성을 확보토록 탄성설계를 해야 한다.
      - 때 재현주기는 100년을 기준으로 한다.
      - ② 하중조합 U = 1.0(D+L+E+Q+H)이며 이 경우 활하중(L)은 단선에만 적용한다. 다만, 하중기호는 KDS 24 12 10에 따른다.

철도계획 KDS 47 15 05 : 2019

#### (나) 구조물 설계

- ⑦ 설계지진 발생 후의 피해 정도를 최소화하고 구조물을 구성하는 부재들의 부분 적인 피해는 허용하나 구조물의 전체적인 붕괴는 방지해야 한다.
- (i) 기초지반 및 말뚝의 극한지지력, 기초 및 구조물의 설계지진력을 적용해야 한다.
- © 구조물은 표 4.4-1 내진등급에 따라 설계하며 비탄성 변형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구조물의 연성거동을 확보해야 한다.
- 한 하중조합 U = 1.0(D+L+E+Q+H)이며 이 경우 활하중(L)은 단선에만 적용한다.
   다만, 하중기호는 KDS 24 12 10에 따른다.
- 교량의 내진설계에서는 연성 확보를 위해서 교각에 소성힌지를 형성시키거나,
   필요한 경우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지진격리장치를 사용할 수 있다. 소성힌지의 형성 위치는 유지관리와 보수, 보강이 가능한 곳을 선택하는 것으로 한다.

#### (다) 철도구조물별 검토사항

- ⑦ 구조물별 내진설계기준에 따라 검토한다.
- ⊕ 별도의 내진 기준이 언급되지 않은 경우 지진하중을 고려하지 않는다.

#### 다. 궤도, 정거장, 신호 및 통신체계 관련 고려사항

- (가) 궤도: 모든 유형의 궤도에 있어서 각 궤도구성품(레일, 체결장치, 침목, 도상 등) 은 모든 수준의 지진하중에 견딜 수 있다고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궤도 구조 자 체에 대해서는 별도의 내진 설계를 수행할 필요는 없다.
- (나) 전차선주 및 전차선: 고가교 상에 건설되는 전차선주의 경우에는, 지지되는 구조 물과의 동적 상호작용을 고려한 내진설계법을 적용해야 한다.
- (다) 신호 및 통신설비: 신호 및 통신설비에 대한 내진설계의 기본방침과 그 설계 방법은 전차선주 및 전차선의 경우와 동일하며, 지중 또는 궤도상에 설치된 신호및 통신설비는 별도의 내진설계를 수행하지 않는다.

#### ③ 설계지반운동

가. 설계지진은 시설물의 사용연한과 해당 기간 내 지진의 초과발생확률로서 정한다. 이를 반영한 지진·화산재해대책법 제12조 국가지진위험지도에 의한 50년, 100년, 200년, 500년, 1000년, 2400년, 4800년 재현주기(7가지) 지진을 설계지진으로 정할 수 있다

#### (가) 평균재현주기별 분류

- ② 평균재현주기 50년 지진지반운동 (5년내 초과발생확률 10%)
- ④ 평균재현주기 100년 지진지반운동 (10년내 초과발생확률 10%)
- ⑤ 평균재현주기 200년 지진지반운동 (20년내 초과발생확률 10%)
- 환 평균재현주기 500년 지진지반운동 (50년내 초과발생확률 10%)
- ⑨ 평균재현주기 1000년 지진지반운동 (100년내 초과발생확률 10%)
- 평균재현주기 2400년 지진지반운동 (250년내 초과발생확률 10%)
- ④ 평균재현주기 4800년 지진지반운동 (500년내 초과발생확률 10%)

KDS 47 10 15: 2019 철도계획

#### ④ 지역에 따른 설계지진의 세기

가. 지진구역 및 지진구역계수(Z, 재현주기 500년 기준)는 표 4.3-2와 같다.

#### 표 4.3-2 지진구역구분

지진구역		행정구역	구역계수, Z
	시	서울, 인천, 대전, 부산, 대구, 울산, 광주, 세종	
I	도	경기, 충북, 충남, 경북, 경남, 전북, 전남, 강원 남부*	0.11g
П	도	강원 북부**, 제주	0.07g

- \* 강원 남부 : 영월, 정선, 삼척, 강릉, 동해, 원주, 태백
- \*\* 강원 북부: 홍천, 철원, 화천, 횡성, 평창, 양구, 인제, 고성, 양양, 춘천, 속초
- 나. 위험도계수(I)는 각 내진등급에 따른 평균재현주기별로, 500년 평균재현주기에 대한 최대지진지반가속도의 비를 나타내며 표 4.3-3과 같다.

#### 표 4.3-3 위험도계수, 1

평균재현주기 (년)	50	100	200	500	1,000	2,400	4,800
위험도계수, I	0.4	0.57	0.73	1.0	1.4	2.0	2.6

- 다. 유효수평지반가속도(S)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.
  - (가) '유효수평지반가속도(S)'란 지진하중을 산정하기 위하여 국가지진위험지도나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제시된 암반지반의 수평지반운동수준을 말한다.
  - (나) 행정구역에 의한 방법으로 재현주기에 따른 유효수평지반가속도(S)는 지진구역 계수(Z)에 각 재현주기의 위험도계수(I)를 곱하여 결정한다.

$$S = Z \times I \tag{4.3-1}$$

(다) 국가지진위험지도를 이용하여 결정한 유효수평지반가속도(S)는 행정구역에 의한 방법으로 결정된 유효수평지반가속도(S) 값의 80% 보다 작지 않아야 한다.

#### ⑤ 지반분류

- 가. '지반분류'란 국지적인 토질조건과 지표 및 지하 지형이 지반운동에 미치는 정도를 공학적인 특성에 근거하여 지반을 분류하는 등급을 말한다.
- 나. 국지적인 토질조건, 지표 및 지하 지형이 지반운동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(가) ~ (다) 까지를 따른다.
  - (Y) 내진설계를 위한 지반분류는 기반암의 깊이(H)와 기반암 상부 토층의 평균전단 파속도 $(V_{Sr,Soil})$ 에 근거한다.
  - (나) 지반은 표 4.3-4와 같이  $S_1$ ,  $S_2$ ,  $S_3$ ,  $S_4$ ,  $S_5$ ,  $S_6$  등 6종류로 분류한다.
  - (다) 토층의 평균전단파속도( $V_{S,Soil}$ )는 탄성파시험 결과가 있을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적용하다.
  - 다. 지반의 자세한 분류 절차는 [별표1]과 같다.

철도계획 KDS 47 15 05: 2019

표 4.3-4 지반분류체계

		분류기준				
지반종류	지반종류의 호칭	기반암 *깊이, H (m)	토층 평균전단파속도, $V_{s,soil}$ (m/s)			
$S_1$	암반 지반	1 미만	_			
$\overline{S_2}$	얕고 단단한 지반	1 - 00 01=1	260 이상			
$S_3$	얕고 연약한 지반	1∼20 이하	260 미만			
$S_4$	깊고 단단한 지반	20 초고	180 이상			
$\overline{S_5}$	깊고 연약한 지반	- 20 초과	180 미만			
$S_6$	부지 고유의 특성평가 및 지반응답해석이 요구되는 지반					

<sup>\*</sup>기반암(bed rock) : 전단파속도가 760m/s 이상을 나타내는 지층

- 라. 지반종류  $S_6$ 는 별도로 부지에 대한 고유의 특성 평가 및 지반응답해석이 요구되는 지반으로서 다음의 경우에는 전문가가 작성한 부지종속 설계응답스펙트럼을 사용해야 한다.
  - (가) 액상화가 일어날 수 있는 지반, 매우 민감한 점토지반, 붕괴될 정 도로 결합력이 약한 지반과 같이 지진하중 작용 시 잠재적인 파괴나 붕괴에 취약한 지반, 이탄이나 유기성이 매우 높은 점토지반.
  - (나) 매우 높은 소성을 가진 점토지반
  - (다) 층이 매우 두꺼우며 연약하거나 중간정도로 단단한 점토
  - (라) 기반암이 깊이 50 m 를 초과하여 존재하는 지반
- ⑥ 설계지반운동의 특성표현
  - 가. 암반지반 설계지반운동의 가속도 표준설계응답스펙트럼
    - $(\gamma)$  암반지반인  $S_I$ 의 5 % 감쇠비에 대한 수평설계지반운동의 가속도 표준설계응답 스펙트럼은 그림 4.3-1과 같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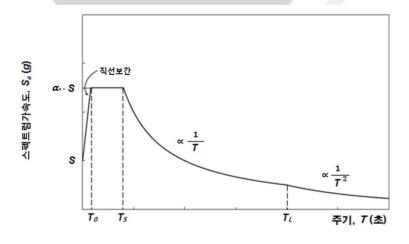


그림 4.3-1 암반지반 수평설계지반운동의 가속도 표준설계응답스펙트럼

⑦ 전이주기(절점주기)는 표 4.3-5와 같다.

<sup>\*</sup>기반암 깊이와 무관하게 토층 평균 전단파속도가  $120 \mathrm{m/s}$  이하인 지반은  $S_{\epsilon}$  지반으로 분류

KDS 47 10 15: 2019 철도계획

# 43-5	수평설계지반운동의	가속도	표준설계응답스펙트럼	저이주기
<u> </u>		<i></i>	# E = 1   O   E = 1 = D	

	$\alpha_A$		전이주기(sec)	
수 문	<b>구 분</b> (단주기스펙트럼 증폭계수)	$T_o$	$T_S$	$T_L$
 수 평	2.8	0.06	0.3	3

- H 감쇠비( $\xi$ , %단위)에 따른 스펙트럼 형상은 다음에 제시한 감쇠보정계수  $C_D$ 를 표준 설계응답스펙트럼에 곱해서 구할 수 있다. 단, 감쇠비가 0.5 %보다 작은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해당 구조물의 경우 시간이력해석을 권장한다.
  - · T=0 초 , 모든 감쇠비에 대해서  $C_D=1.0$
  - $\cdot$   $0 \leq T \leq T_0$ , T=0 초에서  $C_D=1.0$ ,  $T=T_0$  에서  $C_D=\left(\frac{6.42}{1.42+\xi}\right)^{0.48}$ 이며 그 사이는 직선보간
  - $\cdot \ T_0 \leq \ T \ , \ C_D = \left( \frac{6.42}{1.42 + \xi} \right)^{0.48}$
- ④ 표준설계응답스펙트럼에 대응하는 비탄성응답스펙트럼이 필요한 경우 [별표2]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.
- (나) 수직설계지반운동의 가속도 표준설계응답스펙트럼은 다음과 같다.
  - ② 5% 감쇠비에 대한 수직설계지반운동의 가속도 표준설계응답스펙트럼은 (가)에 있는 수평설계지반운동의 가속도 표준설계응답스펙트럼과 같은 전이주기와 감쇠보 정계수를 갖는다.
  - () 최대 유효 수평지반가속도에 대한 최대 유효 수직지반가속도의 비는 0.77이다.
- (다) 표준설계응답스펙트럼에 대응하는 가속도시간이력 생성 기준은 [별표3]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.
- 나. 토사지반 설계지반운동의 가속도 표준설계응답스펙트럼
  - (가) 토사지반인  $S_2$ ,  $S_3$ ,  $S_4$ ,  $S_5$ 지반의 5% 감쇠비에 대한 수평설계지반운동의 가속도 표준설계응답스펙트럼은 기반암의 스펙트럼 가속도와 지표면의 스펙트럼 가속도의 증폭비율을 의미하는 '지반증폭계수( $F_a$ ,  $F_v$ )'로부터 그림 4.3-2와 같이 구할 수있다.

철도계획 KDS 47 15 05 : 2019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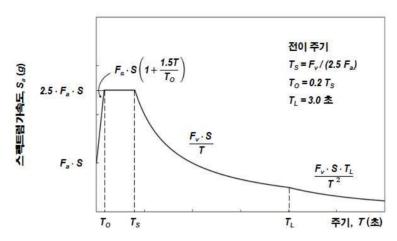


그림 4.3-2 토사지반 수평설계지반운동의 가속도 표준설계응답스펙트럼

- ① 토사지반에서 감쇠비에 따른 스펙트럼 형상은 해당 토사지반에 적합한 가속도시간 이력을 이용하여 공학적으로 적절한 분석과정을 통해 결정 할 수 있다
- (나) 유효수평지반가속도(S)에 따라 단주기 지반증폭계수( $F_a$ )와 장주기 지반증폭계수 ( $F_v$ )는 표 4.3-6을 이용하여 결정한다. 유효수평지반가속도(S)의 값이 중간 값에 해당할 경우 직선보간하여 결정한다.
- (다) 수직설계지반운동의 가속도 표준설계응답스펙트럼은 다음과 같다.
  - $\% 5\% 감쇠비에 대한 <math> S_2 \sim S_5$  지반의 수직설계지반운동의 가속도 표준설계응답스펙트 럼은 (가)에 있는 수평설계지반운동의 가속도 표준설계응답스펙트럼과 같은 전이 주기를 갖는다.

표 4.3-6 지반증폭계수

지반분류	단주기 중폭계수, Fa		장주기 중폭계수, $F_{v}$			
시민단표	S≤0.1	S=0.2	S=0.3	S≤0.1	S=0.2	S=0.3
$S_2$	1.4	1.4	1.3	1.5	1.4	1.3
$S_3$	1.7	1.5	1.3	1.7	1.6	1.5
$S_4$	1.6	1.4	1.2	2.2	2.0	1.8
$S_5$	1.8	1.3	1.3	3.0	2.7	2.4

- ①최대 유효 수평지반가속도에 대한 최대 유효 수직지반가속도의 비는 공학적 판단에 의해 값을 결정할 수 있다.
- (라)  $S_2 \sim S_5$  지반의 경우 그림 4.3-2의 표준설계응답스펙트럼 대신 부지고유의 지반응답해석을 이용하여 결정한 스펙트럼을 사용할 수 있다.
- (마) S6 지반의 경우 부지고유의 지반응답해석을 이용하여 결정한 스펙트럼을 사용한다.
- (바) 가속도시간이력은 암반지반에 대해 작성된 가속도시간이력을 사용하여 지반응답

KDS 47 10 15 : 2019 철도계획

해석을 통해 결정한다.

#### (3) 품질보증 요구사항

- ① 내진시설물의 적절한 품질보증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설계, 시공, 완공 후 공용기간의 단계별로 이루어져야 한다.
- ② 설계는 시설물 부재 재료의 특성과 세부사항 및 치수를 제시해야 하며, 특별한 장치가 도입될 경우에는 이에 대한 특성도 포함해야 한다.
- ③ 시공중에 특별한 검토를 요구하는 중요한 시설물의 부재는 설계도면에서 확인이 되어야 하고, 이에 대한 검토방법이 제시되어야 한다.



#### 부록.내진설계기준별표

## [별표1] 지반분류(S<sub>1</sub>, S<sub>2</sub>, S<sub>3</sub>, S<sub>4</sub>, S<sub>5</sub>, S<sub>6</sub>)

#### □ 지반분류 절차

#### 1. 범위

여기서는 표 4.3-4에 따라서 지반을 S/부터 S6까지 6종으로 분류하는 절차를 기술한다.

#### 2. 정의

(1) 지반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.

 $S_{l}$ : 전단파속도가 760 m/s 이상인 기반암의 깊이(H)가 1m 미만인 지반

 $S_2: H \leq 20 \text{ m이고}, V_{S,Soil} \geq 260 \text{ m/s}$ 인, 기반암 깊이가 얕고 단단한 지반

 $S_3: H \leq 20$  m이고,  $V_{S,Soil} < 260$  m/s인, 기반암 깊이가 얕고 연약한 지반

 $S_4: H > 20$  m이고,  $V_{S,Soil} \ge 180$  m/s인, 기반암 깊이가 깊고 단단한 지반

 $S_5: H > 20$  m이고,  $V_{SSoil} < 180$  m/s인, 기반암 깊이가 깊고 연약한 지반

 $S_6$ : 부지 고유의 특성 평가 및 지반응답해석이 요구되는 다음 경우에 속하는 지반

- ① 액상화가 일어날 수 있는 흙, 예민비가 8이상인 점토, 붕괴될 정도로 결합력이 약한 붕괴성 흙과 같이 지진하중 작용 시 잠재적인 파괴나 붕괴에 취약한 지반
- ② 이탄 또는 유기성이 매우 높은 점토지반(지층의 두께 > 3 m)
- ③ 매우 높은 소성을 띤 점토지반(지층의 두께 > 7 m 이고, 소성지수(PI: Plasticity Index) > 75)
- ④ 층이 매우 두껍고 연약하거나 중간 정도로 단단한 점토(지층의 두께 > 36 m)
- ⑤ 기반암이 깊이 50 m 를 초과하여 존재하는 지반

※ 예외:  $V_{S,Soil}$ 이 120m/s 이하인 지반은 기반암 깊이에 관계없이  $S_5$  지반으로 분류한다.

부지 고유의 특성 평가 및 지반응답해석이 요구되는 지반, 즉  $S_6$ 로 분류할 때는 상기  $S_6$ 에 대한 정의에서 제시한 기준이 고려되어야 한다. 만약 해당 부지가 이 기준과 일치하면 그부지는 지반 종류  $S_6$ 으로 분류되어야 하며, 부지 고유의 특성 평가 및 지반응답해석이 이루어져야 한다.

2.1 기반암에 대한 정의

기반암은 전단파속도 760 m/s 이상을 나타내는 지층이다.

2.2 토층 평균 전단파속도( $V_{S,Soil}$ )

 $V_{S,Soil}$ 은 다음 공식에 따라 결정된다.

$$V_{S,Soil} = \frac{\sum_{i=1}^{n} d_i}{\sum_{i=1}^{n} \frac{d_i}{V_{Si}}}$$

여기서, d= 기반암 깊이까지의 i번째 토층의 두께, m  $V_{Si}$  = 기반암 깊이까지의 i번째 토층의 전단파속도, m/s

2.3 표준관입시험 관입저항치의 전단파속도로의 변환

표준관입시험 관입저항치(SPT-N치)를 전단파속도로 변환할 수 있다. 변환에는 국내 지반에 대해 제안된 상관관계식(Sun et al. 2013\*, 등)을 활용할 수 있다. 표준

31

KDS 47 10 15: 2019 철도계획

관입시험 시 단단한 암질에 도달하여 항타수가 50에 이르러도 30cm 깊이를 관입하지 못할 경우 50타수 이상의  $\Lambda$ 값은 선형적인 비례관계를 토대로 30cm 두께 관입 시  $\Lambda$ 값으로 환산한다. 이때 환산  $\Lambda$ 치의 최대값은 300이다.

\* Sun, C. G., Cho, C. S., Son, M., & Shin, J. S. (2013). Correlations between shear wave velocity and in-situ penetration test results for Korean soil deposits. Pure and Applied Geophysics, 170(3), 271-281.

## [별표2] 표준설계응답스펙트럼에 대응하는 비탄성응답스펙트럼

- 1. 표준설계응답스펙트럼에 대응하는 수평지반운동에 대한 비탄성응답스펙트럼은 변위연  $성 \mathbf{E}(\mu)$ 와 감쇠비 $(\xi)$ 의 함수로 정의된다.
- 2. 감쇠비 5%에 대한 표준설계응답스펙트럼에 대응하는 비탄성응답스펙트럼의 형상은 그림 1의 수평설계응답스펙트럼과 같은 형상을 갖는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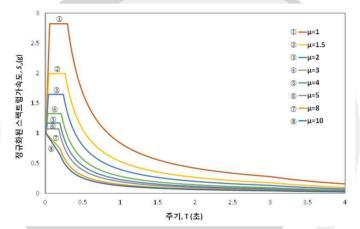


그림 1. 표준설계용답스펙트럼에 대응하는 비탄성용답스펙트럼 기준(T=0.01초에서 Sa=1g로 정규화)

3. 비탄성응답스펙트럼의 유사가속도 스펙트럼에 대한 단주기스펙트럼증폭계수 $(\alpha_A)$ 와 전이주기는 표 1를 따른다.

<i>≖</i> 1. 21	100H-4-	= 타리 ㅠ시기국エ	그럭트립과 언어구	<b>~</b> I
7 H			전이주기(sec)	
구 분	$\alpha_A$	$T_o$	$T_S$	$T_L$
μ=1.0(표준설계응답스펙 트럼)	2.8	0.06	0.30	3
<u>μ</u> =1.5	2.0	0.05	0.27	3
μ=2	1.65	0.044	0.24	3
μ=3	1.33	0.036	0.21	3
$\mu$ =4	1.17	0.03	0.20	3
$\mu$ =5	1.07	0.02	0.18	3
μ=8	0.74	0.2	0.2	3
μ=10	0.64	0.2	0.2	3

표 1 비타성응단스펠트럼의 유사가속도 스펠트럼과 전이주기

※ 표 1에 열거된 변위연성도(μ)는 대표적인 값들이며 예시된 변위연성도 이외의 사이값에 대해서는 보간한 값을 적용할 수 있다. 단, 변위연성도에 대하여 증폭비와 전이주기를 로그단위로 보간하도록 한다.

4. 감쇠비에 대한 스펙트럼 형상은 다음에 제시한 감쇠보정계수  $C_D$ 를 비탄성응답스펙트럼에 곱해서 구할 수 있다. 각 변위연성도에 대한 감쇠보정계수는 표 2의 값을 따른다. 변위연성 도가 8이상의 경우 감쇠보정계수는 1을 사용한다. 단, 감쇠비가 0.5%보다 작은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해당 구조물의 경우 시간이력해석을 권장한다.

표 2. 비탄성스펙트럼의 감쇠보정계수

변위연성도 1.5	변위연성도 2	변위연성도 3
$C_{D,1.5} = \left(\frac{7.23}{2.23 + \xi}\right)^{0.42}$	$C_{D,2} = \left(\frac{7.70}{2.70 + \xi}\right)^{0.37}$	$C_{D,3} = \left(\frac{6.68}{1.68 + \xi}\right)^{0.24}$
변위연성도 4	변위연성도 5	변위연성도 8 이상
$C_{D,4} = \left(\frac{6.47}{1.47 + \xi}\right)^{0.20}$	$C_{D,5} = \left(\frac{6.17}{1.17 + \xi}\right)^{0.16}$	$C_D = 1$

- ※ 표 2에 열거된 변위연성도(μ)는 대표적인 값들이며 예시된 변위연성도 이외의 사이값에 대해서는 가까 운 변위연성도의 감쇠보정계수 중 큰 값을 사용한다.
- ① T=0초, 모든 감쇠비에 대해서  $C_D=1.0$
- $\textcircled{2} \ 0 \leq T \leq T_o$  , T = 0초에서  $C_D = 1.0$  ,  $T = T_O$ 에서  $C_D = C_{D,\mu}$ 이며 그 사이는 직선보간
- $\Im T \geq T_o$ ,  $C_D = C_{D,u}$

#### [별표3] 표준설계응답스펙트럼에 대응하는 가속도시간이력 작성 기준

- □ 인공합성 가속도시간이력 작성
  - 인공합성가속도시간이력의 포락함수에 대한 최소 요구조건은 다음과 같다.
  - 1. 시간이력의 절단(cut off) 진동수는 최소 50Hz 이상이어야 한다.
  - 2. 규모에 따른 구간선형 포락함수의 형상과 지속시간은 그림 2 및 표 3과 같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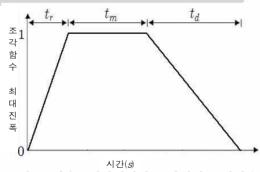


그림 2. 가속도시간이력의 구간선형 포락함수

표 3. 가속도시간이력 구간선형 포락함수에 대한 지진규모별 지속시간

지진규모	상승시간 ( <sub>t<sub>r</sub></sub> )	강진동지속시간 ( $t_m$ )	하강시간 ( <sub>t<sub>d</sub></sub> )
7.0이상-7.5미만	2	12.5	13.5
6.5이상-7.0미만	1.5	9	10.5
6.0이상-6.5미만	1	7	9
5.5이상-6.0미만	1	5.5	8.0
5.0이상-5.5미만	1	5	7.5

KDS 47 10 15 : 2019 철도계획

강진동지속시간 $(t_m)$ 의 한쪽 파워스펙트럼밀도(PSD; Power Spectral Density)는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.

$$S\!(f) = \frac{\mid F\!(f) \mid^2}{\pi \ t_m}$$

여기서, F(f)는 강진동지속시간의 푸리에 변환이다.

3. 그림 2의 포락함수가 적용되지 않은 경우 강진동지속시간  $t_m$ 은 가속도시간이력의 누적에 너지가 5%에서 75%에 도달하는 구간으로 정의된다. 누적 에너지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.

$$E(t) = \int_0^t a^2(\tau) d\tau$$

여기서,  $a(\tau)$ 는 지반가속도시간이력이다.

- 4. 다수의 인공합성 가속도시간이력으로부터 계산된 5% 감쇠비 응답스펙트럼의 평균은 전체 주기 영역에서 표준설계응답스펙트럼의 10%보다 작아서는 안 된다.
- 5. 다수의 인공합성 가속도시간이력으로부터 계산된 5% 감쇠비 응답스펙트럼의 평균은 0.04 초와 10초 주기 영역에서 표준설계응답스펙트럼의 30%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.
- 6. 어떤 두 개의 가속도시간이력 간의 상관계수는 0.16을 초과할 수 없다.
- 7. 시간이력 생성을 위해 표준설계응답스펙트럼에 대응하는 파워스펙트럼이 필요한 경우 수 정 Kanai-Tajimi 모델로 정해지는 파워스펙트럼 형상을 사용할 수 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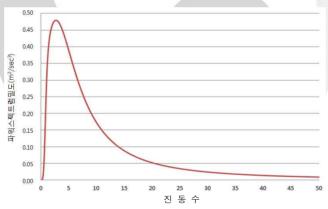


그림 3. 수정 Kanai-Tajimi 모델의 형상

표 4. 수정 Kanai-Tajimi 모델 파라미터 (제곱평균제곱근 가속도 0.5g)

수정 Kanai-Tajimi 파라미터	$S_o$	$\omega_g$	$\xi_g$	$\omega_{cp}$	$\xi_{cp}$
값	0.35 m2/s3	25.02 rad/s	1.00	5.63 rad/s	0.64

$$S_g^{1-sided}(\omega) = S_o^{1-sided} \frac{1 + 4\xi_g^2(\omega/\omega_g)^2}{\left[1 - (\omega/\omega_g)^2\right]^2 + 4\xi_g^2(\omega/\omega_g)^2} \times \frac{(\omega/\omega_{cp})^4}{\left[1 - (\omega/\omega_{cp})^2\right]^2 + 4\xi_{cp}^2(\omega/\omega_{cp})^2}$$

철도계획 KDS 47 15 05 : 2019

8. 제곱평균제곱근(RMS; Root Mean Square) 지반가속도가 0.5g가 아닌 경우에는 목표 파워스 펙트럼밀도를 제곱평균제곱근 지반가속도의 제곱으로 눈금을 바꾸어야 한다.

- □ 실지진기록을 활용한 가속도시간이력 작성
- 1. 실지진 기록은 국내여건과 유사한 판 내부(intra-plate) 지역에서 계측된 기록을 선정한다. 이때, 관측소 하부지반이 S1 지반 혹은 이에 준하는 보통암 지반에서 계측된, 고려하는 설계지진과 유사규모의 기록을 선정하여야 한다.
- 2. 선정된 지진기록은 S1 지반의 수평설계지반운동의 가속도 표준설계응답스펙트럼(그림 4.4-1)에 맞추어 수정 적용한다. 수정 시, 원본파형의 왜곡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파형의 응답스펙트럼을 설계응답스펙트럼에 맞추어 보정(Spectral Matching)하는 것을 추천한다. 이때, 설계 대상구조물의 탁월주기(dominant period)를 주 대상으로 보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.
- 3. 입력 지진기록 최대지반가속도(PGA; Peak Ground Acceleration)의 절대크기가 중요한 경우, 상기 절차로 보정된 지진기록에 대하여 최대지반가속도를 보정할 수 있다.

KDS 47 10 15 : 2019 철도계획

## 집필위원

성 명	소 속	성 명	소 속
황선근	한국철도기술연구원	신지훈	한국철도기술연구원

## 자문위원

성 명	소 속	성 명	소 속
구웅회	㈜서영엔지니어링	정혁상	동양대학교
안태 봉	우송대학교	조성호	중앙대학교

## 국가건설기준센터 및 건설기준위원회

성 명	소 속	성 명	소 속
이용수	한국건설기술연구원	정혁상	동양대학교
구재동	한국건설기술연구원	구자안	한국철도공사
김기현	한국건설기술연구원	김석수	㈜수성엔지니어링
김태송	한국건설기술연구원	김재복	㈜태조엔지니어링
김희석	한국건설기술연구원	소민섭	회명정보통신㈜
류상훈	한국건설기술연구원	여인호	한국철도기술연구원
원훈일	한국건설기술연구원	이성혁	한국철도기술연구원
주영경	한국건설기술연구원	이승찬	㈜평화엔지니어링
최봉혁	한국건설기술연구원	이진욱	한국철도기술연구원
허원호	한국건설기술연구원	이찬우	한국철도기술연구원
		최상철	㈜한국건설관리공사
_		최찬용	한국철도기술연구원

##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

성 명	소 속	성 명	소 속
김현기	한국철도기술연구원	최상현	한국교통대학교
이광명	성균관대학교	정광섭	포스코건설
신수봉	인하대학교	손성연	씨앤씨종합건설(주)
이용재	삼부토건(주)		

철도계획 KDS 47 15 05 : 2019

국	투	亚	톳	부

성 명	소 속	성 명	소 속
임종일	철도건설과	홍석표	철도건설과
문재웅	철도건설과		



KDS 47 10 15: 2019

철도계획

2019년 4월 08일 개정

소관부서 국토교통부 철도건설과

관련단체 한국철도시설공단

34618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한국철도시설공단

Tel: 1588-7270 http://www.kr.or.kr

작성기관 한국철도기술연구원

16105 경기도 의왕시 철도박물관로 176 한국철도기술연구원

Tel: 031-460-5000 http://www.krri.re.kr

국가건설기준센터

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(대화동)

Tel: 031-910-0444 E-mail: kcsc@kict.re.kr

http://www.kcsc.re.kr